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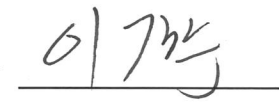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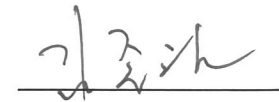


계약심의위원회 의결서

구분	내 용
의결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(주) 대경엠앤아이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○ “유양기술(주)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.5개월간 제한 ○ “서해플랜트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.5개월간 제한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상기와 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함</p>

2017. 6. 28.

계약심의위원회

위 원 장	총무관리처장	김 명 훈 
위 원	법무팀 담당역	이 준 희 
위 원	총무관리처 상생지원팀장	이 강 수 
위 원	석유비축처 비축관리팀장	이 필 광 _____
위 원	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장	김 종 관 

계약심의위원회 의사록

1. 개최일시 : 2017.06.28. 10:00
2. 심사안건 :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
3. 개최장소 : 총무관리처장실
4. 참석위원 : 위원장 총무관리처장 외 3명
5. 결석위원 : 석유비축처 비축관리팀장
6. 기타참석자 : 총무관리처 국내조달팀장 박세현(간사)
7. 회의내용 :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

회 의 록

위원장 : 금일 불참자 비촉관리팀장을 제외한 제적위원의 2/3 이상이 모였으므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 간사 안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: (안 건 설 명)

위원장 : 본 건 관련 해당업체들은 부정당업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며 제재 기간은 최대 6개월 및 3개월이고 1/2까지 감경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?

간 사 : 네. 그렇습니다.

위원장 : 업체들이 계약 및 심사를 포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?

간 사 : 첨부한 업체들의 사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업체들의 경우 총액만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후 세부 산출내역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지않는 것을 인지하여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.

위원장 : 그렇다면 이러한 업체들로 인해 공사가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?

간 사 : 입찰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재공고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 것 이외의 피해는 없습니다.

비촉기술팀장 : 계약체결은 늦어졌으나 해당 지사의 개방점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.

위원장 : 이 업체들이 이전에도 이러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

간 사 : 없습니다. 처음입니다.

위원장 : 이 업체들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은 있습니까?

법무팀 담당역 : 안전 검토 결과 이 안전은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제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위원장 : 그렇다면 제재는 확실하다면 감경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비축기술팀장 : 세 업체 전부 처음 제재대상이 된 점 및 우리 공사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1/2로 경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

총무팀장 : 동의합니다.

법무팀 담당역 : 비축기술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(주) 대경엠앤아이는 6개월에서 1/2 감경한 3개월, (주) 유양기술 및 서해플랜트는 3개월에서 1/2 감경한 1.5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의결합니다. 이상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.